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
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3. 11. 26.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2월 6일 영등포구청장 제안
- 나. 회부일자 : 1993년 2월 13일
- 다. 상정일자 : 1993년 11월 26일
<제22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조남성)

가. 제안이유

- 도로굴착복구 공사 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토록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중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검사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6조)
- 위탁해지 사유를 정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 본 제정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기왕에 서울시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한 행정권한 위임사항으로 도로의 파손행위 및 불법굴착 또는 승인을 득한 공사등에 대한 현장감독 및 공사시공의 적정여부를 가려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청의 인력난해소 및 주민불편 최소화

의지를 담고 있음.

○ 그러나 본 조례안 제2조 2항이 규정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얼마나 있으며 동 조례안 제2종의 수탁자에 대한 경비 보조범위나 방법제시가 안된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배부 참조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6. 수정안 요지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중 동조례안 제2조 제1항 각호의 확인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위탁범위 확대

7. 수정안 글자

도로굴착복구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중 동조례안 제2조 제1항 각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던 것을 영리법인까지 위탁범위 확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공
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93. 11. 26.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본 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법인과 단체에게 수탁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최소화 하기 위함.

2. 수정 주요 골자

도로굴착 복구 공사에 관한 감독업무중 동 조례안 제2조 제1항 각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던것을 "영리법인"까지 위탁범위 확대

수정안비교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관한 감독업무 중 다음 각호의 확인 업무를 <u>비영리법인</u>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u>	제2조(업무의 위탁) ① ----- <u>----- 확인 업무를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영동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동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2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1항 각호 규정의 확인업무 위탁대상에 영리법인을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영동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53
----------	-----

제출년월일 : 1993. 1.
제출자 : 영동포구청장

1. 개점이유

-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중 일부를 위탁 운영토록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및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골자

-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업무 중 위탁업무를 정함(안 제2조)
-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

요한 보고, 검사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6조)

○ 위탁 해지사유를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②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영동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동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동포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중 일부 위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관한 감독업무 중 다음 각호의 확인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대로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확인
 2. 사용자제 품질의 적합성 여부 확인
 3. 도로굴착복구공사장 안전시설 설치 상태 확인
 4.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사실확인을 요청한 사항
-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술, 인력 및 도로굴착복구공사업무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 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복구공사 확인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 4 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와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 지침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준수하여야 한다.

제 5 조(업무의 지도, 감독)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도하기 위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 6 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직원의 교체 요구 및 위탁의 해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7 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4. 수탁자에게 위탁업무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